

하남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

발의연월일 : 2025. 4.

발 의 자 : 금광연 의원

1. 제안이유

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축제의 안전성과 책임성 확보 방안 마련.

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적용범위 규정(안 제1조~3조)
- 지역안전협의회의 협의 또는 심의사항 규정(안 제4조)
- 협의회 위원장 및 위원의 구성사항 규정(안 제5조~제6조)
- 협의회 회의 소집 및 의결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- 안전관리책임자 지정을 규정(안 제9조)
- 안전점검 실시 및 보완조치 사항 규정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2024년 3월 시행된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지역축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관서, 소방관서 등의 장에게 범죄 예방을 위한 순찰, 소방안전점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안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고 자치단체마다 개최 횟수가 많은 지역축제에 대한 부분을 보다 세밀하게 정의하고 안전관리계획도 꼼꼼하게 세울수 있도록

하기 위한 것으로

- 검토 결과 관련 법령의 범위에서 적절하게 제정되는 것으로 사료됨.